

원주지역 아파트 신축현장 지역업체 인력·자재 참여 대폭 확대

오늘 양해각서 체결

【원주】아파트 신축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된다.

원주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담당실에서 단계동 봉화산 벨라시티 2차 아파트와 원주기업도시 7블록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시행사인 시공사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건

설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

봉화산 벨라시티2차는 단계동 도시개발사업지구 B-1블록에 신축될 예정으로 인접한 566세대, 지상 21~24층 봉화산 벨라시티 1차 아파트에 이어

839세대, 지상 19~29층 규모로 (주)해피드림과 SG건설(주)이 각각 시행과 시공을 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0.84%로 총 공사비 891억여원 중 275억여원을 지역업체로 참여한다.

라온프라이빗 아파트는 원주기업도시 7블록에 713세대, 지상 13~30층 규모로 라온종합건설(주)과 라온건설(주)이 각각 시행과 시공을 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총 공사비 928억여원 가운데 343억

여원으로 36.95%이다.

라온건설(주)은 원주시 차상위계층을 위해 1,0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을 포함해 지역 신축아파트 관내 업체 참여 공사비는 모두 3,825억여원으로 집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유학렬기자 hyoo@kwnews.co.kr

공사비 3,825억 풀린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내년부터 제때 받는다

정부, 개선안 데드라인 제시... “올 연말까지 결론낼 것”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이 1년 넘게 헛바퀴만 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계약예규 등 관련 규칙과 규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계약예규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손질 “간접비, 자율조정항목 포함 발주기관 지급 회피 막아야”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물론 계약예규 등에 대한 개정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도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서 제외된 탓에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율조정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 협의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선조정 한 뒤 사후에 기재부가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연장 간접비가 자율조정 항목에서 빠져 있다 보니 발주기관은 기재부와 사전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간접비를 포함하고 최종낙찰가의 10%로 고정돼 있는 자율조정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가 자율조정 항목에 추가되면 기재부를 상대로 한 발주기관의 사전협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자율조정 한도를 상향조정하면 물가변동, 설계변경, 변경경비 등의 지출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 소진으로 공기연장 간접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예규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간접 노무비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최근 3개월 급어의 평균금액을 해당 직종별로 곱해 산정하는 등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실비 산정에 대한 이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실적인 실비 산정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 증수수료를 추가하고 유희장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공사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요율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미비 등을 핑계로 대고 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함께 계약예규 등을 서둘러 개정해 발주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 관리 규정 ‘먹통’ 됐는데...

3년째 모른 국토부... 업계만 피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업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소재 토목공사업체인 A사는 작년 주기적 신고 때 경기도로부터 자본금이 기준(7억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사는 청문회를 통해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다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하 재무진단서)’를 제출해 소명했지만 경기도 담당자는 “재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건설업체 기업진단서)은 주기적 신고대상 건설사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무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재제처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무진단서의 신뢰성이 의심될 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관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관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 말부터 행정처분에 인용되는 재무진단서에 대한 감리를 하지 않

‘재무진단서’ 감리 주체
업무 불이행 지침 세우

자본금 기준 미달 건설사
소명 기회 박탈, 처분 잇따라
현실에 맞게 지침 개정 시급

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바꿨다. 내부 지정 기능을 넘어 행정처분의 근거로 진단결과가 자주 쓰이자 부담을 느낀 것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이 3년째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A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기도 건설기술과 담당자는 “재무진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감리시스템이 불능인 상태에서 담당자 판단으로 최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A사 관계자는 “자본금 적정성 여부를 재검증할 때 써야 할 재무진단서를 ‘선 영업정지 처분 후 감정’ 용도로 쓰고 있다”며 “건설업 관리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규정을 어긴 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A사 외에도 피해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평택의 토목건축공사업체인 B사, 파주의 건축공사업체인 C사 등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재무진단서를 통한 소명절차를 밟지 않았다. B사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재무진단서를 제출하지 말고 추후 감경 절차 때 제출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현재 B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주 A사와 경기도 간의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는 A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정은 규정인 만큼 따르기로 했다”며 “국토부가 건설업 관리규정과 기업진단서 지침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서둘러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관리위원회 측과 재무진단서 감리업무에 대해 재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 요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